

올레비아누스의 장로회 정치를 위한 여정

이남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초록]

본 연구는 올레비아누스가 장로회정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헌신한 과정을 고찰하고 올레비아누스가 참여한 교회법을 분석한 논문이다.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는 독일 개혁신교회의 설립자 중 하나로서 교회법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파리, 오를레앙, 부르주의 학교에서 법학을 공부 한 후 그는 스위스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 때 제네바에서 장로교회정치와 교회권징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경험했다. 트리어 종교개혁을 시도했으나 탄압에 의해 실패한 후에, 하이델베르크로 가서 새로운 팔츠교회법(1563)을 작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장로회적인 정치 조직과 교회권징의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 이 때 토마스 에라스투스에 반대하면서 교회권징의 필요성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적인 교회정치를 옹호했다. 결과적으로 교회 권징의 필요성은 승인되었지만 최종 권한은 선제후에게 남아있게 되었다. 이후 교회조직에 대한 그의 헌신은 1584년에 헤르보른으로 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완전한 장로회정치체제는 1586

논문투고일 2017.07.31. / 심사완료일 2017.08.17. / 게재확정일 2017.09.15.

년에 네 개의 제후영토의 교회로 구성된 총회가 헤르보른에서 열렸을 때 완성되었다. 총회의 회장은 올레비아누스였다. 여기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교회를 당회, 구회(노회), 대회, 총회로 조직했다. 이것이 영토를 넘어선 최초의 장로회 정치체제를 도입한 법이었다. 본 연구논문은 이 교회법의 형성과정을 탐구하고 위에 언급된 교회법들을 분석하고 관련 주제에 대해 토론한다.

키워드: 올레비아누스, 장로회, 하이델베르크, 팔츠, 헤르보른, 교회법, 교회 권징, 에라스투스

1. 들어가며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Caspar Olevianus)는 독일 트리어(Trier)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중에 복음전도자로 전환을 하는 인물이다.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머무르면서 칼빈을 알았다. 후에 고향 트리어로 돌아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큰 성공을 거두는 듯 했으나 곧 이은 핍박에 쫓겨나와 하이델베르크로 갔다. 거기서 하이델베르크가 개혁신학에 견고히 서게 역할을 한 후 루터주의가 세력을 잡자 다시 쫓겨나 베를레부르크(Berleburg)를 거쳐 헤르보른(Herborn)으로 가서 봉사했다.

그는 뛰어난 설교자요 목회자로 알려져 있고, 신학교를 세우고 가르쳤던 훌륭한 교수였다. 신학적으로는 언약신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그가 교회에 공헌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교회법의 작성과 적용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팔츠의 수도 하이델베르크에서 팔츠의 교회법의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후 헤르보른에 정착해서 개혁교회의 교회법이 정착되도록 앞장섰다.

본 글에서 우리는 올레비아누스가 하이델베르크와 헤르보른에서 교회법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본다. 또 팔츠의 교회법과 헤르보른 총회가 결정한 교회법의 주된 내용과 특징이 무엇인지 분석해본다. 이 작업의 결과로 독일의 초기 개혁교회의 교회법의 모습과 내용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II. 하이델베르크에서 올레비아누스의 장로회 정치 시도

1. 하이델베르크로 온 올레비아누스

올레비아누스는 1536년 독일 트리어에서 태어나 고등교육을 위해 파리를 거쳐 법학으로 당시 최고의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오를레앙과 부르주에서 공부했다.¹ 1557년 시민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평생의 헌신은 법학이 아니라 신학에 있었다. 이는 그가 유학 중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강물에 빠진 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으나 자신이 익사의 위험에 처했고, 그 때 자신이 살아나게 된다면 복음전도자로 헌신해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서원했었다. 기도 후에 그는 한 종에 의해 강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고 이후 종교개혁가들의 글, 특히 칼빈의 글을 읽으며 자신의 서원을 잊지 않았다. 그 후 제네바로 가서 칼빈에게서 직접 배웠다. 이렇게 해서 법학자요 신학자로서의 길을 가게 된다. 법과 신학 둘 다 공부한 이력으로 이후 올레비아누스는 독일 개혁교회법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끼치게 되었다.

1 올레비아누스의 생애에 대해선 다음을 참고하라: 이남규,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두 거장』(서울: 익투스, 2017). Karl Sudhoff, *C. Olevianus und Z. Ursinus, Leben und Ausgewählte Schriften* (Elberfeld, 1857); Karl Müller, "Caspar Olevian - Reformator aus Leidenschaft. Zum 400. Todestag am 15. März 1987," *Monatshefte für Evangelische Kirchengeschichte des Rheinlandes* 37 & 38 (1988 & 1989), 13-138; Andreas Mühlhng, *Caspar Olevian* (Zug: Achijs Verlag, 2008).

그가 하이델베르크에서 활동하기 전에, 서원한대로 1559년 고향 트리어에서 종교개혁 활동을 했었다. 대학 강당을 얻어 라틴어로 가르치다가 독일어로 설교를 한지 한 달도 되기 전에 트리어는 종교개혁의 휩쓸려 갈 것처럼 보였다. 도시의 절반이, 어쩌면 도시의 삼분의 이가 올레비아누스를 지지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석 달이 되지 못해 실패했다. 트리어의 주교가 선제후로서의 권세로 무력으로 도시를 통제하면서 오히려 올레비아누스는 붙잡히게 되고 생명의 위험에 처했던 것이다. 이 때 팔츠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올레비아누스를 구하기 위한 정치외교노력에 앞장섰다. 프리드리히 3세의 도움으로 올레비아누스는 석방되고 추방되어 하이델베르크로 왔다.

올레비아누스는 1559년 12월 말쯤 하이델베르크에 도착했다. 이때는 루터주의와 개혁주의 사이에서 성만찬 논쟁이 한바탕 크게 지나간 뒤였다. 1559년 2월 오토하인리히의 죽음으로 그 뒤를 이어 선제후의 일을 시작한 프리드리히 3세는 소위 제2성만찬 논쟁으로 일컬어지는 루터주의와 개혁주의 사이의 성만찬 논쟁을 정리해야 했다. 양편에서 과격한 자들을 내쫓으면서 중립적인 모양새를 취했으나, 멜란히톤의 평가를 받아 그것을 잣대로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개혁주의자들 편에 유리하게 되었다. 올레비아누스가 하이델베르크에서 공식적 활동을 시작하는 1560년 초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 신학부에 루터주의자들은 없었다. 신학부에는 칼빈주의자들인 보키누스와 트레멜리우스가 있었고, 의학부에는 교수와 교회위원회(Kirchenrat)으로 활동하던 츠빙글리주의자 에라스투스가 있었다.

프리드리히 3세는 1560년 6월 딸의 결혼식을 맞아 방문한 루터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 사이의 토론 후에 분명한 개혁주의의 노선을 따랐다. 노선이 결정되자 팔츠를 위한 새로운 요리문답서와 교회법이 필요했다. 이 두 문서는 그 목표에 있어서 공통점을 갖는다. 틀림과 다름을 제거하고, 바름과 같음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서문에서 프리드리히 3세는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순수한 같은 형식의 교리로”(zu reiner /

auch gleichförmiger lehr) 배워야 한다고, 또 요리문답서를 통해서 “오류와 불일치”(unrichtigkeit und ungleichheit)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요리문답서가 지향하게 될 두 방향은 ‘바름’(Richtigkeit)과 ‘같음’(Gleichheit)이다. 마찬가지로 교회법도 이 두 방향이 목적이다. 실제로 교회법의 서문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초판 서문에서 말했던 필요성과 목적을 요약한 후 교회법에도 똑같은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예식과, 성례의 집례와 다른 실천들에서 똑같이 ‘바름’(richtigkeit)과 ‘같음’(gleichförmigkeit)이 요구된다.² 팔츠교회는 요리문답서와 교회법을 통해서 바름과 같음을 추구하면서 개혁주의의 길을 걸어갔다.

이 일에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르시누스는 특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작성에, 올레비아누스는 교회법의 작성에 힘을 썼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공식적으로는 위원회의 것이지만, 우르시누스가 남긴 글들 중 108문답으로 이루어진 소요리문답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유사하여서, 우르시누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1563년의 교회법의 작성에는 올레비아누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남겨진 편지들을 통해서 발견된다. 그는 팔츠 교회법의 주저자이거나 저자, 또는 공동저자, 적어도 핵심적인 부분들의 대부분을 작성했을 것이다.³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교회법은 함께 간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교회법의 실행을 통해 교회 안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 프리드리히 3세의 의도였다.⁴ 이 두 문서를 통해서 팔츠에 개혁주의는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2. 올레비아누스와 칼빈⁵

2 Emil Sehling (ed.), *Die evangelischen Kirchenordnungen des XVI. Jahrhunderts* (Tübingen: J. C. B. Mohr (Paul Siebeck), 1969) [이하 KO 14], 335.

3 Müller, “Caspar Olevian,” 37.

4 Müller, “Caspar Olevian,” 38.

5 이 주제에 대한 더 많은 논의는 출처의 다음을 참고하라: “팔츠의 교회법에 끼친 칼빈의

칼빈은 올레비아누스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carissime pater)였다.⁶ 올레비아누스에게 끼친 칼빈의 영향은 그가 복음전도자가 되기로 서원한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히 절대적이다. 1556년 올레비아누스가 법학을 공부하던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가지고 스스로 공부했다. 1558년 제네바로 가서 칼빈에게서 배웠다. 그때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서를 프랑스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했다. 제네바에 대한 인상이 깊게 새겨져 제네바를 떠나기 전 동생 안톤을 불러 이제 막 설립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도록 했다. 트리어의 종교개혁이 암초를 만나 하이델베르크로 가서, 1561년부터 대학에서 교의학교수로 활동했을 때, 올레비아누스는 스스로 요약한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사용했다고 한다.⁷ 그의 마지막 사역지인 헤르보른(Herborn)에서 교수로 사역하면서는 칼빈의 책을 출판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요약(1586), 칼빈의 설교 네편(1587), 칼빈의 율기 설교(1587)가 그것이다. 1587년 세상을 떠나게 되니,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에 한 일이 칼빈의 글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올레비아누스의 신학은 칼빈으로 시작해서 칼빈으로 마친 것이다.

칼빈은 신성로마제국의 유력한 지역인 팔츠의 종교개혁 소식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하고 알고 있었다. 다테누스가 1560년 9월 칼빈에게 보낸 편지를 예로 들 수 있다. 다테누스는 팔츠의 상황을 정리해서 칼빈에게 보고했다. 즉, 팔츠가 개혁주의 노선을 걷게 된 것을 알리면서 루터주의자들의 행위와 프리드리히 3세가 루터주의자들을 내보낸 것을 보고했다.⁸ 퀴에르케타누스(Quercetanus)도 팔츠의 상황을 칼빈에게 알려주었다. 1562년 1월 16일에 보낸 편지를 보면, 팔츠의 종교개혁의 구체적인 상황들,

영향” 「칼빈연구」 제10집 (2013), 145-71.

6 CO 19, 539.

7 Karl Müller, “Caspar Olevian,” 28. 그러나 하이델베르크의 공식 교의학 교재는 멜란히톤의 Loci 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멜란히톤의 책과 칼빈의 책을 함께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8 CO 18, 187-90.

즉 선제후의 굳은 확신, 빵을 떼는 성만찬의 집례(하이델베르크에서 1561년 12월 7일부터 행해졌다), 그 때까지 아직 예배당에 있던 우상들의 철거 등을 보고했다. 올레비아누스가 교회권징에 대해 프리드리히 3세를 강하게 설득했다는 것도 덧붙여 알렸다.⁹ 이런 사실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 보고 받은 칼빈은 참 종교에 대한 열정을 보인 프리드리히 3세에게 예레미야 주석을 헌정하면서 바른 성만찬교리를 다시 설명했다.¹⁰

올레비아누스가 교회법에 대해 칼빈에게 여러 조언을 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올레비아누스의 편지를 통해 그가 팔츠교회법 작성에 크게 관여했다는 것과 팔츠의 교회법에 칼빈과 제네바 교회법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가장 먼저 1560년 4월에 올레비아누스가 칼빈에게 보낸 편지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올레비아누스는 제네바 교회의 치리회 규정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덧붙이기를 팔츠 교회위원회 몇 사람과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올레비아누스가 하이델베르크에 온 지 몇 달 되지 않은 때(그는 1559년 12월 말쯤 하이델베르크로 왔다)에 이미 교회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팔츠교회의 교회법 작성에 대한 관심이 1560년 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법의 핵심이 요리문답서가 자리한다고 했을 때 요리문답서 작성에 대한 관심도 이 시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1560년 9월 올레비아누스가 다시 같은 부탁(제네바의 치리회 규정)을 하는 것을 볼 때, 4월의 부탁이 칼빈에게 전달되지 않았던지 칼빈이 어떤 이유로 보내지 않았던지, 어떤 이유로든 제네바 치리회 규정이 올레비아누스 손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편지에서 올레비아누스는 제네바의 환자심방의 방식, 개인에 대한 심사방식 등 제네바 교회법의 규정과 형식을 청하면서, 프리드리히 3세와 팔츠 교회위원회가 교회권징에 대해

9 "... nuper adeo nempe 7 Decembris fractio panis sacri recepta in usu coenae est, et expurgatae reliquiae idololatriae a templis: ad disciplinam instituendam vehementer ab Oleviano impellitur." *CO* 19, 258.

10 Calvin, *Ioannis Calvini praelectiones: in librum prophetiarum Jeremiae, et Lamentationes* (Geneva: Io. Crispinum, 1563), ii.

적극적인 것을 밝힌다. 그해 11월에 칼빈은 답장하면서, 제네바에서 목사들을 세울 때, 성경해석 능력의 검증, 그 후 중요한 교리들에 대한 시험, 그리고 설교를 해보게 한 후, 비밀투표로 검증된 자들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천거한다는 사실을 알린다. 유아세례에 대해서는 집회 때에 세례를 베풀며, 아이의 아버지가 참석하며, 성만찬에는 신앙고백과 함께 나와야 하고, 일년에 네 번 심사한다는 사실, 그 외 교회생활과 권징 등에 대해서도 말해준다.¹¹

1562년 9월 24일 올레비아누스가 칼빈에게 보낸 편지에서 올레비아누스의 교회권징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프리드리히 3세는 교회권징에 대해 적극적일 뿐 아니라, 교회권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¹² 올레비아누스는 자신이 선제후를 설득해서 얻어낸 결과라는 것을 밝힌다. 나아가 교회권징에 대한 팔츠교회 지도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언급한다. 딜러(Diller)는 권징에 대해 소극적이나 호의적이고, 출레거(Zuleger)는 적극적이다. 그러나 에라스투스는 여기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다.¹³ 여기서 드러나는 입장 차이는 다가올 팔츠교회의 길며 격렬했던 교회권징논쟁의 그림자다. 10월 27일 칼빈이 보낸 편지를 보면, 선제후 위원회에서 두 명, 대학이 두 명, 시에서 네 명, 그리고 목사들이 함께하는 권지를 위한 조직을 조심스럽게 제안하는데, 그 목적은 다양한 부분들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었다.¹⁴ 칼빈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팔츠는 교회권징에 대한 견해 차이로 격렬한 논쟁을 치르게 된다.

1563년 4월 올레비아누스는 다시 칼빈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는 팔츠의 교회법에 제네바 교회법이 큰 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보여준다. 올레비아누스는 제네바 교회법이 독일어로 번역된다는 것을 칼빈에게 보고한다. “당신의 요리문답이 며칠 안에 나보다 언어 능력이 뛰어난 자카리아스 우르

11 CO 18, 235-37.

12 “Princeps animo est propenso et necessitatem disciplinae constituendae intelligit ...” CO 19, 538.

13 CO 19, 539.

14 CO 19, 564.

시누스에 의해 잘 번역된 독일어로 오게 됩니다. 거기다 성례의 실행방식과 기도 등이 추가됩니다. 모든 것이 신실하게 고려되어서, 독일 사람들이 읽는 것을 거절하지 않도록 당신의 이름과 당신들의 도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프랑스 개혁교회 전체에서 행해지는 방식: 성찬의 실행, 혼인, 기도, 요리문답 등. 요리문답의 명칭: 프랑스 교회의 요리문답.”¹⁵ 실제로 제네바 교회법은 하이델베르크에서 “프랑스 개신교회 법”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그 내용은 공동기도, 성례의 실행, 혼인예식, 환자방문, 기독교요리문답이다.¹⁶ 프랑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적대적인 자들에게 책이 거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 번역을 우르시누스에게 돌리고 있지만 올레비아누스에게 ‘우리’의 계획이었다. 1563년 팔츠의 교회법의 세례, 성만찬, 기도, 혼인예식, 환자방문 등에 대한 규정은 제네바 교회의 영향을 받았다.¹⁷

3. 올레비아누스와 에라스투스: 하이델베르크 교회권쟁논쟁¹⁸

토마스 에라스투스(Thomas Erastus, 1524-1583)는 에라스투스주의(Erastianism)라는 용어로 더 유명하다고 할 수 있다. 에라스투스주의란 용어는 대표적인 교회 표준문서를 만들었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정치체제 논쟁 때문에 대중화되었다. 이 때 스코틀랜드 장로교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개혁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라스투스주의와 싸워야 했다. 에라스투스주의를 반대하는 논박으로서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참여했던 스코틀랜드교회의 총대인 길레스피의 유명한 “아론의 싹 난 지팡이”(Aarons Rod

¹⁵ CO 19, 685.

¹⁶ *Ordnung der evangelischen Kirchen in frankrich / so gehalten wird / im Gemeinen Gebet / Reichung der Sacrament / Einsegnen der Ehe / Besuchung der Krancken / und Christlichen Catechismo* (Heidelberg: Johannes Mayer, 1563).

¹⁷ J.F. Gerhard Goeters, “Einführung,” in *KO* 14, 45.

¹⁸ 이 주제에 대한 더 많은 논의는 저자의 다음을 참고하라: “에라스투스주의의 등장으로서 하이델베르크 권쟁논쟁” 『성경신학저널』 제5권 (2013), 273-91.

Blossoming)가 있다.¹⁹ 길레스피는 이 책에서 상세하게 유대인들의 공회
의 성격을 드러내면서 국가적 성격과 교회적 성격이 구분되어 있음을 상세
하고도 강력하게 논증하였다. 길레스피는 국가정치와 교회정치는 구분되며
그 직분자들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한 논쟁이 이미 1560년대에 하이델베르크에서 있었는데, 올레비아누
스와 에라스투스가 양편의 대표자였다.

웨스트민스터회의에서 언급되는 에라스투스주의를 떠올리면서 에라스
투스를 개혁주의의 원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오해가 될 것이
다. 1524년 9월 7일 스위스 칸톤 아르가우(Aargau)의 바덴(Baden)에서
태어난,²⁰ 에라스투스는 1542년에서 1544년까지 바젤에서, 그 후에 파두
아(Padua)와 볼로그나(Bologna)로 가서 여러 해 동안 철학과 의학을 공부
한 후 1552년에는 철학과 의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에라스투스의 취리
히와의 밀접한 관계를 생각할 때, 학창시절 어느 시기엔가 취리히에서 머물
면서 취리히의 학자들과 개인적 관계를 맺었을 것이 제안되기도 한다.²¹
1558년 팔츠(Palz)의 선제후 오토하인리히의 부름을 받아 하이델베르크로
와서 의학부의 제2교수로 활동했다. 하이델베르크가 개혁주의의 길로 갈
수 있었던 데에는 에라스투스의 공이 컸다. 에라스투스는 의학부 교수인데
도 루터주의자들과의 성만찬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개혁주
의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변호했다. 그는 하이델베르크에서 1558년부터
1564년까지는 교회의회 회원으로서 활동하는 등 팔츠 교회의 진로에 큰

19 George Gillespie, *Aarons Rod Blossoming or The Divine Ordinance of Church-Government vindicated* (London, 1646).

20 그의 생애에 대한 최근의 객관적 기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Dagmar Drüll, *Heidelberger Gelehrtenlexikon 1386-1651* (Berlin/Heidelberg: Springer, 2002), 141-42; 그 외에 자세한 그의 삶과 신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Ruth Wesel-Roth, *Thomas Erastus* (Baden: Moritz Schauenburg Lahr, 1994).

21 Robert C. Walton, "Der Streit zwischen Thomas Erastus und Caspar Olevian über die Kirchengzucht in der Kurpfalz in seiner Bedeutung für internationale reformierte Bewegung," *Monatshefte für Evangelische Kirchengeschichte des Rheinlandes* 37/38 (1988/1989): 211; Wesel-Roth, 2-5.

영향을 끼쳤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1562년 9월 칼빈에게 보낸 편지에서 올레비아누스는 팔츠교회에 교회권징으로 인한 균열이 가시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올레비아누스의 반대편에 있던 에라스투스는 교회권징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 즈음 올레비아누스와 한 마음이었던 우르시누스가 작성했던 신학요목은 교회권징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한다. 320문에서 교회권징의 필요성, 321문에서 교회권징의 형식으로서 장로들을 세워 실행할 것을 말한다. 322문에서 칼빈과 제네바의 방식을 따라 교회와 국가의 영역을 분리했다.

322. 교회권징이 정치적 관원의 책임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첫째, 우선적인 차이는 관원은 악한 자들에게 물리력으로 벌을 주고 교정하고, 교회는 다만 말로서 권고하고 교제로부터 제외시킨다. 둘째, 관원은 형벌을 통한 공의의 실행에 만족하고, 교회는 권고 받은 자들의 교정과 구원을 추구한다. 셋째, 관원은 형벌을 주기위해 나아가지만, 교회는 시기적절한 교정에 의해서 관원들의 형벌을 피하게 하도록 형제로서 권고한다. 넷째, 관원은 교회를 해치고 교회에 의해 책망 받아야 하는 많은 잘못에 대하여는 별하지 않는다.²²

다음해에 나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같은 방향이 나타난다. 82문에서 고백과 생활에서 불신과 불경건을 나타내는 자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묻고,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는 자들이므로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가 열쇠의 직무(Amt der Schlüssel)를 통해 그런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만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답한다. 이 열쇠의 직무인 교회권징에 대해 83문에서 다루는데, 여러 번 권고에도 생활과 고백을 고치지 않는 자들은 교회 또는 교회에 의해 세워진 자들에게

22 Zacharias Ursinus, "Die Summa Theologiae Ursins," in *Der Heidelberger Katechismus und vier verwandte Katechismen*, ed. A. Lang (Leipzig: A. Deichert'sche verlagsbuchh. Nachf., 1907), 199.

(der Kirche oder denen, so von der Kirche dazu verordnet sind) 보고되어야 하고, 같은 권면을 듣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83문은 교회에 의해 세워진 자들의 결정을 교회의 결정과 나아가 하나님의 결정과 동일화한다.

올레비아누스가 주된 역할을 했던 1563년 11월 15일에 반포된 팔츠의 교회법에도 같은 입장이 발견된다. 성만찬 예식서 마지막에 교회권징에 대해서 언급한다. 여기서 성만찬 참여에서 제외시키는 교회권징의 주체에 대해, 한명이나 몇 명의 교회사역자나 다른 사람들의 권력 안에(in eines oder etlichen kirchendiener oder anderer personen macht)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기독교회 전체(bey einer gantzen christlichen gemein)에 있다. 교회사역자들도 교회의 가장 작은 지체로서 그 아래에 있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형편과 필요에 따라서 자비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몇 사람이 피택되어야 한다. 그들은 교회사역자와 함께 권징을 행한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교정을 약속하고 보일 때까지 성찬의 금지로 기독교회로부터 분리한다.²³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와 교회법의 교회권징의 입장을 1564년의 팔츠 교회위원회규정(Kirchenratsordnung)이 변경한다. 교회위원회규정은 교회권징이 국가권력과 구분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국가권력과 교회권력이 함께 협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국가권력에 귀속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만일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하는 관원이 있다면 목사가 경고하고, 이 경고는 상급관청에 보고된다.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생활이 악한 교회회원의 경우에 목사에게 경고를 받을 뿐 아니라, 관원에 의해 경찰법(Polizeiordnung)에 따라 형벌을 받는다. 그런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에는 최고 권력자 선제후의 결정에 맡겨지게 된다. 이 때 교회가 하는 역할이란 선제후의 출교 결정을 설교단에서 선언하는

23 “... welche [etliche erbare und gottsförchtige menner] ..., so sie sich daran nit keren, mit verbietung der heiligen sacramenten von der christlichen gemein absöndern, biß sie besserung verheissen und erzeigen.” KO 14, 388.

것이다.²⁴ 따라서 팔츠치리회 규정은 실제적인 실행에 있어서 경찰업무가 우위에 있으며, 국가권력이 최종적이며 실제적 결정을 하는 방식이었다. 제네바와 비교하자면 제네바에서는 교회가 실제로는 시행정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지만 행정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치리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팔츠치리회 규정에 올레비아누스가 만족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만 왜 이런 규정을 정하게 되었는지 당시 교회위원회 구성을 생각한다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당시 팔츠의 교회위원회(Kirchenrat)는 세 명의 비교회적(weltlichen) 인물과 세 명의 교회적(geistlichen) 인물로, 즉 여섯 명으로 이루어졌다. 세 명의 비교회적 인물에 에라스투스가 있었고, 교회적 인물에 올레비아누스가 속해 있었다. 교회위원회규정 작성에 앞장선 에헴(Ehem)과 출레거(Zuleger)도 교회권징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올레비아누스 편에 서는 인물들이다.²⁵ 모든 면에서 올레비아누스에게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위원회 규정이 올레비아누스가 만족하지 못할 방식으로 작성된 것에는, 에라스투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는 것과 에라스투스의 반대가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진 것에는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방식으로 교회가 권징을 시행한다는 것이 당시에 팔츠에 상당히 파격적이었다는 이유가 있다. 그 외에 이 치리회 규정을 단순히 경찰규정의 발전으로 보았거나 아니면 교회규정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나온 어쩔 수 없는 타협안일 수 있다는 추측이 있다.²⁶ 올레비아누스는 이 규정의 보안이나 수정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올레비아누스와 에라스투스의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는 1568년 6월 10일에 있었던 공개토론이다. 당시 칼빈주의자 보키누스가 좌장이고 답변자는 영국 출신의 조지 위더스(George Withers)였다. 위더스는 국가교회를 반대해 영국을 떠난 인물이다. 이 공개토론 이후 6월 21일 위더스는

24 “Kirchenratsordnung 1564,” in KO 14, 421-24.

25 Volker Press, *Calvinismus und Territorialstaat-Regierung und Zentralbehörden der Kurpfalz 1559-1619* (Stuttgart: Ernst Klett Verlag, 1970), 240.

26 Goeters, “Einführung,” 49.

찬키우스와 함께 박사학위를 받았다.²⁷ 위더스는 원래 ‘예복과 의식에 대한 토론’(disputatio de vestimentis ac ritibus)을 주제로 택하려고 했으나 평화를 위해서 다른 주제를 택할 것을 권고받아 다른 주제로 변경했는데, 그 중에 교회권징과 출교의 필요성에 대한 논제가 있었다.²⁸ 평화를 위해 주제를 바꾸었으나 갈등의 폭발을 불러온 위더스의 논제 중에서 12번째와 13번째만이 알려져 있다.

12.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선포와 성례의 합법적인 시행과 치리의 직무가 교회에서 유지되어야만 한다.

13. 그런데 이 직무를 나는 이렇게 말한다: 곧 목사들이 장로회와 함께 죄를 범한 누구라도 (왕들까지도) 고발하고 책망하고 출교하고 교회권징을 위해 관계된 다른 것들을 시행할 권한을 가질 뿐 아니라 실행한다.²⁹

이 공개토론은 아침에 행해졌는데, 이 토론이 마쳐갈 때, 에라스투스가 도착했다. 에라스투스는 그 논제가 자신을 향했다고 생각하면서 위더스의 논제에 반대했다. 반대의 내용이 길었으므로, 좌장 보키누스는 그날에는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루나 이틀이 지난 후에 다시 계속하자고 했다. 올레비아누스가 앞장선 신학부 교수들과 에라스투스가 앞장선 다른 학부 교수들과의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에라스투스는 처음에는 103개의 논제로 자기의 생각을 밝혔고, 다시 이것을 75개의 논제로 정리했다.³⁰ 이것이

²⁷ Gustav Toepke, ed., *Die Matrikel der Universität Heidelberg von 1554 bis 1662* (Heidelberg, 1886), 601.

²⁸ Burkhard Gotthelf Struve, *Ausführlicher Bericht von der Pfälzischen Kirchen-Historie* (Frankfurt: Johann Bernhard Hartung, 1721), 213.

²⁹ “XII. Sinceram Verbi divini praedicationem, & legitimam Sacramentorum administrationem, oportet in Ecclesia Gubernationis urgere officium. XIII. Officium autem hoc voco, ut Ministri cum Presbiterio quosuis peccantes (etiam Principes) arguendi, increpandi, excommunicandi, reliquaue ad disciplinam Ecclesiasticam pertinentia peragendi facultatem & habeant & exercent.” Struve, 213; Ursinus, *Opera* 1, 301.

에라스투스주의자들의 교과서가 된다.

주요 논쟁점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회의 치리권이 어디에 귀속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권징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에라스투스는 교회권징을 행사하는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의 생각에, 당시 국가의 모습은 기독교국(res publica christiana)이므로 교회와 국가는 한 체제 아래에 있다. 이제 문제는 이 체제의 머리가 누가 되는 것인가이다. 만일 제네바 방식을 따른다면 이 기독교가 체제의 머리는 교회며, 치리를 행사하는 목사와 장로들에게 실질적 권력이 돌아가는 것이다. 에라스투스가 생각할 때 이 모습은 바로 교황이 세속권력을 자기 아래에 두는 모습과 차이가 없다. 그 모습은 왜곡된 모습이기 때문에, 에라스투스는 기독교국의 머리는 바로 이 국가의 행정부에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기독교국의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원의 무리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무리는 갖기 때문이다. 이제 에라스투스는 마 18:17의 “교회에 말하라”는 그 무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말하는 의미이다. 여기서 ‘교회에 말하라’는 ‘산헤드린에 말하라’가 된다.³¹ 그리고 에라스투스 당대의 시대의 의미로 말한다면, ‘공직자들에게 말하라’, 이 때 공직자는 교회가 뽑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시의회에 말하라’가 된다.³²

올레비아누스와 신학부 교수들은 산헤드린이 국가에 속했다(politicum)는 에라스투스의 의견에 반대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 18:17)는 것에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일은 국가의

30 Thomas Erastus, *Explicatio Gravissimae Quaestionis utrum Excommunicatio, quatenus Religionem intelligentes & amplexantes, a Sacramentorum usu, propter admissum facinus arceat: mandato nitatur Divino, an excogitate sit ab hominibus.* (Pesclavii, 1589). 1-63.

31 Erastus, *Explicatio*, 34-5.

32 “Nostrae autem Ecclesiae non habent potestatem talem senatum eligendi …” Erastus, *Explicatio*, 35.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다. 게다가 여기서 세리는 국가의 일을 하는 자로서 공직에 속해있으나 교회의 일원이 아니다.³³

게다가 에라스투스는 출교에 반대했다. 출교에 의해서 범죄자가 교회로부터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이다. 범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³⁴ 에라스투스는 출교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발견이라고 주장했다.³⁵ 에라스투스의 의견에 신학부 교수들은 반대했다. 출교는 성경에서 지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거듭된 권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 18:17)는 것은 출교에 대한 말씀이다. 또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한다(고전 5:5). 훈계를 받도록 후메나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준 예가 있다(딤후 1:20).

이 논쟁의 구도 속에서 숫적으로만 본다면 올레비아누스와 신학부 교수들은 열세였다. 숫적 대세는 에라스투스에게 있었다. 에라스투스는 이렇게 한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그[선제후]는 아들들에게도, 보좌관들에게도(한 사람 예함을 제외하고는 이들은 모두 계속해서 그에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귀족들에게도, 학자들에게도, 대중들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³⁶ 에라스투스의 편지에 따르면, 하이델베르크의 여론은 에라스투스 편이었다. 미래권력인 선제후의 아들들, 위에서 아래로 거의 모든 고위관료들, 신학부 교수 3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교수들이 에라스투스 쪽에 있었다. 올레비아누스와 신학부 교수들은 숫적으로 열세였으나 가장 중요한 선제후

33 “Declarare vero aliquem publicanum & alienum a regno Dei, non est magistratus politici, sed ecclesiastici: quia publicanus potest esse membrum civitatis, sed non ecclesiae Christi.” Ursinus, *Opera 1*, p. 302.

34 Erastus, *Explicatio*, 21-24.

35 “... putamus, humanum potius inventum esse Excommunicationem ... quam divinam quandam legem.” Erastus, *Explicatio*, 25.

36 “... non filios, non consiliarios, qui ei uno excepto Ehemio constanter adversantur omnes, non nobiles, non doctos, non plebejos audit ...” Sudhoff, *C. Olevianus und Z. Ursinus*, 344. 이 인용은 Erastus가 Bullinger에게 보낸 편지(1570년 1월 1일) 중 일부이다.

의 마음을 얻고 있었다. 선제후는 이 논쟁이 신학에 관련된 것이란 이유로 신학부 교수 외에는 침묵할 것을 명했다. 에라스투스를 향한 명령이었다. 에라스투스는 선제후의 아들들과 귀족들의 지원아래서 논쟁을 이어갔다.

하이델베르크 권징논쟁의 배후에 제네바와 취리히가 있었다. 신학부교수들은 직간접적으로 제네바를 경험했고, 교회가 시의회로부터 독립적으로 교회권징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교회권징의 실제적인 실행을 통해 제네바는 성도들의 생활의 교정까지 살폈다. 이런 모습은 인상적이어서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취리히는 에라스투스를 지지했다. 취리히는 츠빙글리 때부터 권징을 성만찬과 연결한 적이 없었다.³⁷ 불링거는 프리드리히 3세에게 여러 번 편지를 보냈으나 선제후는 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자의 간접적인 답이 있었다.³⁸ 올레비아누스와 하이델베르크 신학자들은 제네바를 따라 장로회에 의한 권징을 생각했고 나아가 권징을 성만찬에 연결시켰다.

4. 팔츠교회의 결론

선제후의 마음이 확고했으므로 에라스투스와 불링거의 반대에도 1570년 7월 13일 교회권징령이 반포되었다.³⁹ 이 법에 따르면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인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얼마의 사람들, 즉 4명, 6명, 8명을 뽑아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의회와 법원과 교회에서 뽑도록 했다.⁴⁰ 장로가 참여한 회를 통한 권징의 방식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지만 교회가 국가로부터 완전한 독립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수찬금지

³⁷ Walton, "Der Streit," 226.

³⁸ Walton, "Der Streit," 236.

³⁹ "Edikt über die Einhaltung der Polizeiordnung, die Einrichtung der Kirchendisziplin und der Classicalconvente und die Verbesserung des Almosens vom 13. Juli 1570," in *KO 14*, 436-41.

⁴⁰ "... nach gelegenheit deren grösse und menge jedes orst etzliche erbare und gottsfurchtige menner (dern jeder enden nach grösse der communen biß in vier, sechs oder acht oder im fal weniger personen) auß dem rath, gericht, und gemeinden" *KO 14*, 437.

나 출교는 그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선제후 곧 국가권력이 갖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에라스투스의 힘을 완전히 극복하진 못한 것이다.

이 법령에는 인접 지역의 8-9개의 목사관구에 있는 목사들이 한 달에 한번 씩 모여 신학적 질문을 살핌으로써 신학재교육의 역할을 했다. 또 목사 개인의 교리와 생활이 점검되도록 했는데, 이것은 제네바 교회의 목사회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나아가 1568년 베젤의 개혁교회 모임 이후 드러나는 구회(노회)(Klassenkonvente)와 비슷한 형태이다. 비슷하다고 해도 아직 장로들이 이 모임에 참석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개혁교회의 전형적인 구회(노회)(Klassenkonvente)라고 할 수 없다.⁴¹

그러나 팔츠교회는 계속해서 발전을 보여준다. 1571년에 ‘당회의 직무’(officium presbyterium)란 규정을 마련했다. 매주 오후 예배 후에 당회가 모이도록 하며,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회의를 하며, 매 회의 때 회의록이 작성되고 다음 회에 다시 읽히도록 했다. 게다가 교회 권징에 대해서도 당회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었다.⁴²

같은 해에 쓰여진 소위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목사와 신학자들의 보고는 장로회 정치체제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⁴³ ‘당회, 목사들의 4주에 1회 모임, 직무모임(Amptsversammlung), 총회’라는 4 단계의 회가 있어서 개혁교회의 모습, 즉 당회(Presbyterie) - 구회(노회)(Klassenkonvente) - 지회(Provinzialsynode) - 총회(Generalsynode)의 구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아직 팔츠에는 관이 주도하는 교회위원회(Kirchenrat)가 팔츠교회의 중심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교회와 목사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공국의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교회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다른 지역의 개혁교회가 팔츠교회와 논의할 때 교회위원회와 논의해야 했으며, 지회의 성격을 갖는 직무모임도 비록 회의는 회의 때 선출되는 의장이 이끌지라도 회의의 주선자는 공식적으로 선제후에 임명되는 감독(Superintendent)이었다. 선제

41 Paul Münch, *Zucht und Ordnung*, (Stuttgart: Klett-Cotta, 1978), 106.

42 KO 14, 448-50.

43 KO 14, 450-55.

후령 팔츠지역의 교회는 두 체제, 즉 교회 자체 내의 회의체제와 공식적으로는 관이 주도하는 체제가 함께 하는 방식이었다.⁴⁴

따라서 규정들에 나타난 장로회 정치적 모습을 보면서 ‘쿠어팔츠의 장로회의 체제의 최종적 승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⁴⁵ 장로회적 정치요소들을 보여주는 한두 가지 요소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생각할 때는 교회의 완전한 독립적인 정치의 모습은 아니다. 따라서 팔츠교회의 모습은 비록 여러 단계의 장로회 회의체제를 보여줄지라도 최종적 장로회 회의체제의 승리가 아니며, 국가로부터 독립적이며 고유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⁴⁶ 게다가 장로회 회의 체제의 최종적 승리라고 규정하는 고터스도 당시의 다른 문서들을 보면 팔츠에서 위의 규정들마저도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⁴⁷

올레비아누스와 에라스투스의 논쟁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에라스투스를 지지하던 이들 중 몇몇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설이 있었다. 에라스투스의 적극 지지자였던 아담 노이저(Adam Neuser)와 몇몇 인물들이 아리안주의에 빠져들어 유니테리언인 것이 드러났다. 팔츠는 ‘칼빈주의’라는 이단을 들여왔고, 이제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모함을 받을 상황이었다. 1575년 4월 에라스투스도 자신이 아리안주의라는 모함을 받자 대학과 선제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다.⁴⁸ 에라스투스와 교회권징파는 어느 정도 힘을 잃었다. 그 후 1576년 프리드리히 3세가 죽으면서 하이델베르크의 개혁주의는 모든 논쟁과 발전을 그칠 수 밖에 없었다.

5. 팔츠교회법 발전의 의미

올레비아누스가 하이델베르크로 간 이후 팔츠교회는 교회정치에 있어서

44 Press, *Calvinismus und Territorialstaat*, 123.

45 Goeters, “Einführung,” 56.

46 Münch, *Zucht und Ordnung*, 107.

47 Goeters, “Einführung,” 56.

48 Drüll, *Heidelberger Gelehrtenlexikon* 141.

큰 변화를 겪는다. 가장 먼저 장로를 뽑아 교회권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로회의 회의체제의 성격을 점점 도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권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는 못한 체제였다. 이것은 올레비아누스에게 있어서 하나의 발전의 성격이었다. 에라스투스가 앞장선 많은 반대자들과 싸우면서 올레비아누스는 장로회 정치 체제를 하나씩 도입하며 발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장로회 정치 체제의 중요한 특징 세 요소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목사가 아닌 비교역자 신자들 중에서 장로를 뽑아 교회권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면에서 팔츠는 성공한 것이다. 둘째, 장로회 여러 단계의 회의정치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이 면에서 팔츠는 장로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모임이 있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만 성공한 것이다. 셋째,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가 국가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팔츠는 아직 더 나아가야 했다.

따라서 올레비아누스의 입장에서 미완성이었을 것이다. 프리드리히 3세의 죽음 이후 후임 선제후 루드비히 6세가 루터주의를 실행하면서 모든 논의와 발전은 그쳤다. 그렇다 해도 올레비아누스의 사역은 계속되면 장로회 정치를 위한 여정은 계속되어 헤르보른에서 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장로회 정치 체제를 출발시키는데 주도적으로 기여한다.

III. 헤르보른에서 올레비아누스와 교회정치

1. 헤르보른까지

1576년 10월에 있었던 프리드리히 3세의 죽음은 독일개혁신교회에는 고통스런 일이었다. 그의 죽음 후 아들 루드비히 6세가 아버지를 이어 팔츠지역의 통치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강한 루터주의자였다. 프리드리히 3세가 죽어가면서 아들을 만나기 원했지만 루드비히는 거절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육성으로 전해질 유언, 곧 개혁교회를 위한 유언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3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손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다.⁴⁹

프리드리히 3세가 죽음 이후 보름 되던 11월 11일에 장례식이 있었다. 그리고 11월 17일 올레비아누스는 모든 직을 잃는다. 올레비아누스가 늑대들이 와서 양들을 잡아 먹을 것이라고 했다는 말이 루드비히의 귀에 들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드비히는 올레비아누스에게서 모든 직분을 뺐았을 뿐 아니라, 말하고 가르치고 쓰는 일을 금지했고 자택감금을 시켰다.

다음해 올레비아누스는 베를레부르크(Berleburg)에 정착했다. 중간에 정확한 경로는 불확실하다. 하이델베르크에서 쫓겨난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루드비히 6세의 형 카시미르의 지역인 노이슈타트에 자리를 잡았지만 올레비아누스는 노이슈타트로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이델베르크의 권징논쟁 중에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깊게 파였기 때문이다. 1576년 말 하이델베르크를 떠난 올레비아누스는 그후 네덜란드를 방문한 것 같고, 2월엔 프랑켄탈에 나타난다. 올레비아누스는 호로닝엔(Groningen)과 도르트레히트(Dordrecht)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이델베르크에서 최고시종장(Großhofmeister, 1574-1577)으로 있었던 루드비히 폰 비트겐슈타인(Ludwig von Wittgenstein)를 따라 베를레부르크(Berleburg)로 갔다.

올레비아누스는 베를레부르크에서도 개혁자이자 교육자로 활동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공작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그는 목사요 궁중설교가요 라틴어학교의 교장으로 봉사했다. 1577년에는 교회에서 학교를 시작했다. 베를레부르크는 비트겐슈타인지역의 중심이었다. 비트겐슈타인은 작은 지역이었는데, 올레비아누스는 이 지역의 개혁을 이끈다. 1577년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과 팔츠의 교회법이 실행되었다. 그런데 처음으로 성만찬 예식에서 빵이 떼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1578년 부활절이었

49 A. Kluckhohn,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 Vol. II (Braunschweig, 1872), 1027.

다. 올레비아누스가 개혁의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실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올레비아누스의 영향력은 주변으로 확대되었다. 비트겐슈타인 지역 아래 나사우(Nassau)지역이 있고, 나사우 아래에 베테라우(Wetterau)지역이 있다. 올레비아누스는 이 지역들에 영향을 끼쳐 개혁주의가 자리잡게 한다. 나중에 도르트회의가 열렸을 때 이 지역 즉 나사우-베테라우(Nassau-Wetterau)의 총대들이 파송될 정도로 개혁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은 올레비아누스에게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나사우(Nassau) 지역을 다스리던 요한 6세는 루드비히 폰 비트겐슈타인의 친구였다. 나사우의 요한 6세의 형이 그 유명한 네덜란드 독립운동의 지도자인 빌헬름(Wilhelm 1. Oranien)이었다. 요한 6세는 올레비아누스를 자기지역에 데려오고 싶어했다. 그러나 루드비히는 올레비아누스를 보내고 싶어하지 않았고, 올레비아누스도 가장 어려울 때 자기에게 쉴 곳을 준 비트겐슈타인에 남고 싶어했다. 요한 6세도 어려운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앞장서서 도왔다. 1574년 비텐베르크에서 크립토 칼빈주의자들이 쫓겨났을 때, 크리스토프 페첼(Christoph Pezel)과 다른 사람들을 자기 지역으로 받아들여 일할 곳을 주었다. 1577년에는 팔츠에서 쫓겨난 사람들 중 몇 사람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1583년 페첼이 브레멘으로 가고, 1584년 1월 옆에서 자기를 돕던 사람(Andreas Rauting)이 죽자 올레비아누스를 다시 불러야만 했다. 루드비히는 올레비아누스를 보내주기로 했다. 1584년 올레비아누스는 베를레부르크를 떠나 헤르보른으로 갔다.

나사우의 요한 6세와 비트겐슈타인의 루드비히는 올레비아누스와 함께 칼빈주의를 자기들의 지역에 뿌리내리고 확장시키기로 의기투합했다. 나사우의 요한 6세가 올레비아누스를 데리고 가고 싶어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헤르보른에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다. 친구 루드비히도 동의하며 올레비아누스를 내어주고 헤르보른에 학교가 세워지는데 힘을 합쳤던 것이다.

그래서 헤르보른에 호헤슐레(Herborner Hohe Schule)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 학교는 대학과정으로서 개혁주의 신앙고백 안에 세워졌다. 올레비아누스와 피스카토르가 가르치면서 바로 유명해졌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보헤미안, 폴란드, 덴마크에서 학생들이 올레비아누스와 피스카토르에게 배우기 위해 이 작은 도시로 찾아 왔다. 게오르기우스 소니우스는 1584년 6월 1일에 요한 6세에게 편지를 보내며 헤르보른으로 가서 올레비아누스에게서 배우고 싶어하는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학교 출신으로 알려진 인물로는 교육학자로 알려진 아모스 코메니우스(Amos Comenius), 거의 최초의 칼빈주의 정치학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하네스 알트후시우스(Johannes Althusius) 등이 있고, 도르트회의에 참가한 총대들 중 여러 명이 이 학교 출신이다. 크리스토프 코르빈(Christoph Corvin)이 시작한 이 학교의 출판사업은 당대에 중요한 책들을 내놓으며 헤르보른이란 지명을 각인시켰다.

2. 헤르보른의 1586년 총회

올레비아누스가 헤르보른에 와서 한 일 중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 중 하나는 1586년에 있었던 헤르보른 총회이다. 이 총회에서 올레비아누스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실현시키려고 했던 교회법을 드디어 정착시켰다. 올레비아누스의 이 땅의 생애가 1587년 3월에 끝이 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1586년에 있었던 헤르보른 총회에 참석하고 칼빈주의적인 교회법을 만든 것은 올레비아누스의 올레비아누스의 마지막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올레비아누스는 헤르보른에 오기 전 베를레부르크에서부터 나사우의 교회법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1582년 1월 16일-27일에 요한 6세는 딜렌부르크에서 교회법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모임을 위해 요한 6세는 자기지역의 여섯 명의 시찰관(Inspektor)를 불렀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에 있었던 올레비아누스도 불러서 조언을 들었다. 이 때 그 전해인 1581년 5월과 6월에 미펠부르크에서 열린 네덜란드 교회의 총회에서 결정

된 교회법을 본으로 삼아 나사우의 교회법을 만들기로 결정했다.⁵⁰ 그리고 요한 6세는 5월 3일에서 5일 다시 회의를 열었다. 요한 6세는 자기 아들들도 참석하게 하고, 비트겐슈타인의 루드비히 공과 졸름스(Solms)의 콘라드 공을 불렀다. 바로 여기에서 자기 영토를 넘어선 장로교적 회의법(presbyterial-synodalen Ordnung)을 받아들여 하나의 총회를 만들기로 합의하게 된다. 이 연장선에서 1586년 7월 헤르보른 총회가 열린다.

1586년 7월 13일 헤르보른에서 열린 총회에 네 지역에서 신학자와 목사 총 26명이 참석한다. 나사우-딜렌부르크(Nassau-Dillenburg)에서 17명이, 비트겐슈타인에서 2명이, 졸름스-브라운펠스(Solms-Braunfels)에서 5명이, 비트-룬켈(Wied-Runkel)에서 2명이 참석했다. 회의록에는 올레비아누스가 1번에 기록되어 있다.⁵¹ 회의는 당일 1차로 아침 여섯시부터 열시까지 모였고, 2차로 오후 세시부터 여섯시까지 모였다. 1차 모임에서 회의를 시작하면서 올레비아누스를 의장(praeses)으로 선출했다. 보좌(adiutus)로는 볼프강 크렐(Wolfgang Krell, ca. 1535-1590)⁵²이 서기

50 미델부르크의 총회와 교회법은 다음을 참고하라: F. L. Rutgers, ed., *Acta van de Nederlansche Synoden der zestiende eeuw* (Utrecht: Kemink & Zoon, 1889), 339-480 [본 논문에선 네덜란드어와 라틴어 전문이 실린 이 자료를 따른다]; J. N. Bakhuizen van den Brink et al., ed. *Documenta Reformatoria: Teksten Uit De Geschiedenis Van Kerk En Theologie in De Nederlanden Sedert De Hervorming* (Kampen: J.H. Kok, 1960), 200-02.

51 헤르보른 총회의 회의록과 결정된 교회법은 다음을 참고하라: Johann Hermann Steubing, ed., *Kirchen- und Reformationsgeschichte der Oranien-Nassowischen Lande* (Hadamar: Neue Gelehrten-Buchhandlung, 1804), 384-94; Aemilius Ludwig Richter, ed., *Die evangelischen Kirchenordnungen des sechszehnten Jahrhunderts: Urkunden und Regesten zur Geschichte des Rechts und der Verfassung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II* (Weimar: Verlag des Landes-Industriecomptoirs, 1846), 473-76; Wilhelm Niesel, ed., *Bekennt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Zolikon-Zürich: Evangelischer Verlag, 1938), 291-8 [본 논문은 라틴어 전문이 실린 이 자료를 인용한다]; Paul Jacobs, ed., *Reformierte Bekennt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in deutscher Übersetzung* (Neukirchen: Buchhandlung des Erziehungsvereins Kr. Moers, 1950), 270-78.

52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인물의 추천에 의해서 페첼이 튀빙겐에서 나와야만 했을 때 나사우-딜렌부르크로 오게되고 헤르보른에서 목사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는 빌헬름 체퍼(Wilhelm Zepper, 1550-1607)⁵³가 뽑혔다.

3. 교회법

총회의 주 안건인 교회법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었던 속회에서 있었다. 회의록에 따르면 1581년의 미텔부르크의 교회법을 올레비아누스가 읽고 이 교회법 전체를 받을 것인지 교정할 것인지가 논의되었다. 그리고 몇 가지가 수정되었으나 중요 항목과 빼대는 거의 그대로 미텔부르크의 것을 받는 방식으로 나사우의 교회법이 마련되었다. 회의록은 이 법을 교회치리에 대한 조항들(*articuli de gubernatione ecclesiastica*)이란 명칭으로 첨부하였다.

교회치리에 대한 조항들은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직분들에 대하여’(de officii); 둘째, ‘회의들과 그 구분들에 대하여’(de conventibus et eorum partitione); 셋째, ‘교리, 성례, 다른 예식들에 대하여’(de doctrina, de sacramentis et aliis ceremonibus); 넷째, 교회권징에 대하여(*de censuris Ecclesiasticis*)로 이루어져 있다.

(1) 직분

직분에 관한 규정들을 보면, 제네바 방식을 따라 네 직분을 말한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직분을 첫 항목에 말한다.⁵⁴ 목사에 대해 가장 먼저 규정한다. 합법적 부름 없이 아무도 가르칠 수 없다(2항). 목사들의 소명은 구회(노회)(*classis*)와 몇명의 장로들의 판단을 따르는데, 선택, 시험, 인준, 임직이 있다(4항).⁵⁵ 목사들은 함부로 자리를 바꾸면 안되고, 지회의

53 나사우-덜렌부르크 출신으로 마르부르크에서 공부했고, 헤르보른에서 궁중목사요 교수가 된다.

54 “1. Articulus primus de Officiis, quae aut sunt: 1. Ministorum, 2. Doctorum, 3. Seniore, 4. Diaconorum.” Niesel, 292. 그런데 단어 사용에 있어 미텔부르크의 교회법과 차이가 있다. 미텔부르크에선 직분을 *functio*라 표현하고, 단순히 종들이라 하지 않고 말씀의 종(*Ministrorum verbi*)이라고 칭한다(Rutgers, 376).

55 “4. Vocatio ministrorum fiat iudicio classis et aliquot seniore, ad quam

(Synodus particularis) 결정없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선 안된다(6항). 목사의 직무는 기도와 말씀 안에 머무르며, 훈련[권징]에 열중하며, 법에 전념하는 것이다.⁵⁶ 8항에서 일상의 직무외에 시찰을 맡게된 목사를 말하며 시찰의 일을 소개한다. 그들은 교회들을 시찰하고 목사들을 다스린다. 목사의 생활에 대한 것도 법에 포함되어서,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주민들은 목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하고(10항), 나이들고 병든 목사들도 교회의 공적인 선한 일(ex publicis bonis)을 통해 생활이 되어야 하고, 목사들이 남긴 사모와 자녀들의 지원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잘되지 않을 때 구회(노회)가 다른 수단들을 궁리해야 한다(11항).

교사(Doctor)의 직분은 성경을 해석하고 이단들로부터 진리를 보호하는 것이다.⁵⁷ 헤르본 교회법은 이 부분에서 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정한다. 어린이를 위한 교사(Ludimoderator)는 학문과 지식만이 아니라 신학과 요리문답을 가르쳐야 한다(12항). 후세에 적절한 목자가 부족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각 수입의 사분의 일을 교육에 사용할 것을 말한다(13항).

장로와 집사와 사찰(aedituos)을 택하는 것에 관해서 택하는 권한은 당회에 있다. 그 후에 그들은 구회(노회)의 동의로 인준되고 그 후에 조심스럽게 직분에 대하여 권고받아야 한다.⁵⁸ 이 부분이 미델부르크의 교회법과 차이가 있다. 미델부르크의 교회법에는 장로와 집사는 투표에 의해서 택해 지는데, 방식은 각 교회에게 자유롭다. 필요한 수의 장로들을 교회앞에 제안하고 거절되지 않으면 승인하거나, 두 배수의 장로들 중에서 뽑는 방식을 제안했다.⁵⁹ 그런데 지금 헤르보른의 법은 당회에 의해 택해지고 구회(노

pertineat: 1. Electio, 2. Examen, 3. Approbatio, 4. Confirmatio seu ordinatio” Niesel, 293.

⁵⁶ “7. Minister officium sit instare in precatone et verbo, urgere diisciplinam et studere ordini.” Niesel, 293.

⁵⁷ “12. ... Doctorem officium interpretari scripturam et veritatem tueri contra haereses.” Niesel 293.

⁵⁸ “5. Quod ad seniores, diaconos pauperum, et aedituos eligendos attinet, potestas eligendi sit penes presbyterium, qui postea suffragio classici conventus confirmandi et postea diligenter de officio admonendi erunt.” Niesel 293.

회)의 동의로 인준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면 아직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헤르보른의 법은 시찰원들이 함께 하면서 회중들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회중들의 생각을 따라서 선택해야한다 되어 있다(25항). 장로의 직무는 목사와 함께 하는 일과 목사를 살피는 일이다. 집사의 직무는 구제금을 모으고 목사의 조언에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해야 한다. 당회 앞에 그 수입과 지출을 보고 해야 한다(18항). 집사를 세우는 것도 장로를 세우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17항). 장로와 집사의 임기는 2년이며, 교회가 필요하면 중간에라도 바꿀 수 있으며, 그래서 매해 장로와 집사의 사직이 있다(19항).

(2) 회의

교회회의는 총 네 단계의 회의, 곧 당회, 구회(노회), 지회, 총회로 구성된다.⁶⁰ 상회와 하회의 관계는 분명한 상하관계에 있다.⁶¹ 상회에서는 하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들, 전제교회 또는 여러 교회에 관계되는 것들이 다루어진다.⁶² 하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자는 상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간다(23). 급한 경우와 필요를 제외하고는 어떤 문제를 상회에 가져오기

59 Rutgers, 382.

60 "20. Conventus servantur ordinarii quadruplices: a) presbyterii, b) Classi, c) Synodi particulares seu provinciales, d) generales." Niesel, 294. 미텔부르크에서 당회는 네덜란드말로는 Kerckenraedt이라 하고, 라틴어로 presbyterium이나 senatus ecclesiasticus로 칭하는데, 독일내에서 Kirchenrat이란 이미 영토내 교회의 치리기관이 있었으므로 presbyterium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미텔부르크에서 총회를 전국회의(nationales)로도 불렀지만 헤르보른에서는 전국적인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총회(generales)로만 부른다(Rutgers, 383). 참고: Wilhelm H. Neuser, "Die Einführung der presbyterial-synodalen Kirchenordnung in den Grafschaften Nassau-Dillenburg, Wittgenstein, Solms und Wied im Jahre 1586," in *Jahrbuch für Westfälische Kirchengeschichte Band 71* (1978), 50.

61 "Presbyterium respiciat ad classicam synodum: classica Synodus ad particularem: particularis ad generalem." Niesel, 295.

62 "22. In maioribus conventibus nihil agatur nisi quod in minoribus antea non potuit expediri, vel pertinet ad totam ecclesiam, vel ad plures." Niesel, 294.

전에 비슷한 문제가 처리되었는지 살펴서 가져와야 한다(33). 모든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낸다(24). 모든 회의에는 의장(*praeses*), 보좌(*assessor*), 서기(*scriba*)가 정해져야 한다. 의장의 직무는 회의의 종료때 이미 끝난다.⁶³

모든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있어야 하고 당회에서는 목사가 의장이다(28항). 구회(노회)에서는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한다(30). 전회의록이 항상 읽혀져서 옳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야 한다(32). 의장은 각 교회의 장로들이 왔는지, 권징이 감사되었는지, 가난한 자들을 염려했는지, 학교에서 옳게 지도하는지, 교회를 위해 구회(노회)의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아야 한다(30). 구회(노회)에서 시찰위원(*inspector*)과 함께 누가 지회에 파송될지 투표로 뽑는다(30). 지회에서는 한 명의 목사와 시찰위원(들)이 총회로 보내진다. 총회는 일 년에 한 번이지만 필요할 때 또 모일 수 있다(35). 각 회의마다 다음 회의의 장소와 시간을 약속해야 한다. 지회는 부활절이 지난 첫 번째 화요일, 총회는 네 번째 화요일에 모인다.

(3) 예식

교리와 성례와 다른 예식에 대한 부분은 교리에 대한 맹세와 함께 시작한다. “말씀의 종들, 모든 장로들, 집사들, 교수들, 학교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순수한 교리에 대해 약속으로 찬동해야 한다. 그리고 지회나 교수들이 먼저 전달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공적으로 경건에 대하여 어떤 것을 가르칠 수 없다.”⁶⁴ 교리에 대한 문제를 지회가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며, 교회회의와 교수들에서 인정되지 않은 교리에 대하여 새로운

63 “29. *Officium praesidis cesset peracta iam Synodo.*” Niesel, 295.

64 “37. *Ministri verbi, omnes seniores et diaconi, item professores et Ludimoderatores testificentur stipulatione consensum in pura doctrina ac nemo aliquid publice edat in sacris, nisi prius communicatur particulari Synodo vel professoribus.*” Niesel, 296.

것을 아무도 가르칠 수 없다는 부분이 교리의 부패에 대한 큰 염려를 보여준다.

세례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칭하며(Foedus Dei, nempe S. Baptismus), 사적이 아니라 공적인 모임에서 목사에 의해 행해진다(38). 회의록첨부 교회법에는 세례예식서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Catechesimi Heidelbergensis)의 사용과 형식을 말하는데(41), 노이저는 하이델베르크의 예식서(Ordinationis Heidelbergensis)에 대한 실수라고 추측한다.⁶⁵ 세례명부에 아이와 부모와 대부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주의 만찬에 대한 항목(43항)에서 성만찬 참여를 신앙고백과 생활과 연결시킨 것을 “개혁교회의 관례를 따라”(pro more reformatae ecclesiae)라고 부른 것이 이때에 개혁교회란 명칭과 그 특징으로서 신앙고백과 생활에 연결된 성만찬 참여가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인상적이다. 적어도 매달 해야 하며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따라 가능한 자주할 것을 언급한다(45항). 성만찬의 시간이 알려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의 교제를 위해 장로들이 이웃교회의 성만찬예식에 참석한다(45항).

다른 사항들로는 장례식 때 읽을 성경구절을 소개하고, 미신을 금지한다(46). 또 전쟁과 페스트와 핍박과 다른 위험이 있을 때에 교회와 권세의 동의로 금식과기도회를 정할 수 있다(47). 절기에 대해서는 성자들의 절기와 오용을 거절하고 주일과 그리스도의 절기를 받고 있다(48항). 찬송에 대해서 모국어로 할 것과 성경의 텍스트에서 가져온 것과 교회회의의 판단에 따른 순수한 교리를 포함한 것으로 말한다(49항). 이것은 미펠부르크판에서 시편만 인정한 것과 비교할 때 차이가 난다.⁶⁶

(4) 교회권징

교회권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와 국가에 대해선 교회와 국가가

⁶⁵ Neuser, “Die Einführung,” 50.

⁶⁶ “51. Soli psalmi Davidis contentur in ecclesia omissis iis canticis quae in sacris bibliis non inveniuntur.” Rungers, 394.

서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임을 밝힌다. 교회의 권세는 영적이어서 국가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고, 국가 공직이 벌을 줄지라도 교회의 견책은 필요하다.⁶⁷ 두 세 사람 앞에서 죄에 대해 경고를 받고 가벼이 생각한다면 당회에 가야 한다(52항). 당회의 경고도 우습게 생각하고 공개적으로 죄를 지으면 주의 만찬에서 제외된다(53항). 출교는 구회(노회)의 결정에 따른다(54항).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명백하게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벌에 합당하면, 장로와 집사는 당회와 이웃교회의 지식에 따라 면직된다(56항). 56항에 목사가 빠진 것은 구회(노회)나 지회에서 다루어져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면직이 따르는 무거운 죄로는, 잘못된 교리(falsa dogmata), 우상숭배, 위증, 간음, 매춘, 도둑질, 폭력, 살인 등 공동체의 다른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다(57항).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자들에게 교리와 생활에 대한 증명서를 전달할 것을 언급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도 그 증명을 해주고, 합당하게 경비도 줄 것을 말한다(59항). 헤르보른 교회법은 마지막 60항에 이렇게 말한다. “어떤 교회도, 어떤 목사도, 어떤 장로도, 어떤 집사도 다른 [교회, 목사, 장로, 집사] 위에 어떤 우위권을 갖지 않는다.”⁶⁸ 상회와 하회의 상하개념 아래 교회 상호간의 형제됨과 평등을 말하면서 칼빈주의적 교회관을 보여주면서 마무리 짓고 있다.

4. 1586년 헤르보른 총회의 의미

1586년 올레비아누스의 큰 역할아래 열린 헤르보른 총회의 분명한 의미는 독일에서 처음으로 장로정치체제의 교회법이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제후영토를 넘어 네 개 지역을 넘어서 하나의 장로정치체제의 개혁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만 한다. 국가와 교회의 역할을 구분하면서 교회의

67 “Nam sicut Ecclesia postestas est spiritualis et neminem excipit a poena politica: ita vicissim censurae ecclesiasticae nihilominus sunt necessariae, etiamsi punit magistratus politicus.” Niesel, 297.

68 “60. Nulla ecclesia, nullus minister, nullus Senio, nullus Diaconus ultra habeat primatum supra alterum.” Niesel, 297.

권징이 국가의 역할을 빼거나 또는 빼가지 않는 방식으로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586년 헤르보른 총회는, 올레비아누스 개인적으로는 하이델베르크에서 그 자신이 정착시키려 했던 교회법을 드디어 정착시켰다는 면에서, 독일 개혁교회로서는 교회권징의 국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과 장로회회의정치체제(presbyterial-synodale Ordnung)가 정착되었다는 면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이 법은 오고 오는 독일의 다른 교회법들에 영향을 끼쳤고, 라인-베스트팔 교회법(Rheinisch-Westfälische Kirchenordnung 1835/1923)에 핵심조항들이 남아있게 되었다.⁶⁹

IV. 나가며

이 글은 올레비아누스라는 한 신학자의 역할을 통해 하이델베르크와 헤르보른에서 작성된 교회법과 그 작성의 문맥을 고찰했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포함한 문서들과 장로교정치체제의 중요한 내용들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형성되었고 정착되었는지, 또 그 의미와 정신에 대한 지식에서 빈곤하다. 교회가 가르쳐야 할 교리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의 적용과 보존과 함께 중요하다. 이 때 필요한 것이 교회정치이며 교회법이다. 교회법은 단순하지 않다. 그 안에는 신학을 담는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해, 신자들의 성화와 생활에 대한 이해, 그것이 실제 적용되는 예배와 성례, 그 안에 포함되는 기도와 찬송, 교회권징과 그것에 포함된 심방, 항존직분에 대한 이해, 그들의 일과 선출 방식, 이 모든 내용을 논의하는 회의체제에 대한 이해에서 개혁교회의 신학이 드러난다. 수백년 전의 개혁교회법은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펴보아서 우리시대가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거나 교정해야 할 것이

69 Wilhelm Boudriot, "Vorwort [für Synodus generalis Herbornaе habitat]," in *Bekenn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ed. Wilhelm Niesel (Zolikon-Zürich: Evangelischer Verlag, 1938), 290.

다. 신학의 순결과 깊이와 경건의 실력, 나아가 신학과 교회정치를 일치시키려고 했던 노력에서 우리가 그 시대 보다 앞서 있다고 감히 말하지 못한다. 우리시대에 우리가 목격하는 한국장로교회의 타락은 대부분 각 회의와 그것을 구성하는 이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 글이 그 회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친다.

[Abstract]**Caspar Olevianus
and the Presbyterian Synodal Church Orde**

Nam Kyu Lee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Caspar Olevianus as a founder of the Reformed Church of Germany devoted himself to the development of the Church Order. After studying law at the schools of Paris, Orleans, and Bourges, he went to Switzerland to study theology and experienced the Presbyterian Church at Geneva. After trying the Reformation of Trier and failing to achieve it, he went to Heidelberg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new Palatine Church Order(1563). He worked with a great zeal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resbyterian organization and Church discipline. He debated against Thomas Erastus for the necessity of the Church discipline and the independent system from the power of the state. The necessity was approved but the final power of discipline remained in the Elector. Afterwards, his dedication for organizing Churches continued in Herborn, to where Olevianus removed in 1584. The full Presbyterian organization was completed in 1586 when the General Synod of four territorial churches was held at Herborn. The president of the Synod was Olevianus and it organized the Church into presbyteries, classes, and synods (provincial and general), with full independence from the power of the state. It was the

first super-territorial Presbyterian synodal Church Order. This Study explores the formation process, analyzes Church Orders mentioned above and discusses the related topics.

Key Words: Olevianus, Presbyterian, Heidelberg, Erastus, Herborn, Church-Order, Church-Discipline, Palatinate

[참고문헌]

1. 1차 자료

“Edikt über die Einhaltung der Polizeiordnung, die Einrichtung der Kirchendisziplin und der Classicalconvente und die Verbesserung des Almosens vom 13. Juli 1570,” Sehling, Emil, ed., *Die evangelischen Kirchenordnungen des XVI. Jahrhunderts 14*. Tübingen: Mohr, 1969, 436-440.

“Kirchenratsordnung 1564,” in Sehling, Emil, ed., *Die evangelischen Kirchenordnungen des XVI. Jahrhunderts 14*. Tübingen: Mohr, 1969, 409-424

Calvin, John,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59 vols. ed. Wilhelm Baum, Eduard Cunitz & Eduard Reuss, Brunswick: C. A. Schwetschke, 1863-1900.

_____. *Ioannis Calvini praelectiones: in librum prophetiarum Jeremiae, et Lamentationes*, Geneva: Io. Crispinum, 1563.

Brink, J. N. Bakhuizen van den, et al., ed., *Documenta Reformatoria: Teksten Uit De Geschiedenis Van Kerk En Theologie in De Nederlanden Sedert De Hervorming*, Kampen: J.H. Kok, 1960.

Erastus, Thomas. *Explicatio Gravissimae Quaestionis utrum Excommunicatio, quatenus Religionem intelligentes & amplexantes, a Sacramentorum usu, propter admissum facinus arcet: mandato nitatur Divino, an excogitate sit ab hominibus*, Pesclavii, 1589.

Gillespie, George. *Aarons Rod Blossoming or The Divine Ordinance of Church-Government vindicated*, London, 1646.

Jacobs, Paul, ed. *Reformierte Bekennt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in deutscher Übersetzung*, Neukirchen: Buchhandlung des

- Erziehungsvereins Kr. Moers, 1950.
- Kluckhohn, August.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Kurfürsten von der Pfalz, Vol. II*, Braunschweig, 1872.
- Niesel, Wilhelm, ed. *Bekenn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Zolikon-Zürich: Evangelischer Verlag, 1938.
- Ordnung der evangelischen Kirchen in frankrich / so gehalten wird / im Gemeinen Gebet / Reichung der Sacrament / Einsegnen der Ehe / Besuchung der Krancken / und Christlichen Catechismo*, Heidelberg: Johannes Mayer, 1563.
- Richter, Aemilius Ludwig, ed., *Die evangelischen Kirchenordnungen des sechzehnten Jahrhunderts: Urkunden und Regesten zur Geschichte des Rechts und der Verfassung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II*, Weimar: Verlag des Landes-Industriecomptoirs, 1846.
- Rutgers, F. L., ed., *Acta van de Nederlansche Synoden der zestiende eeuw*, Utrecht: Kemink & Zoon, 1889.
- Sehling, Emil, ed., *Die evangelischen Kirchenordnungen des XVI. Jahrhunderts 14*. Tübingen: Mohr, 1969.
- Steubing, Johann Hermann, ed., *Kirchen- und Reformationsgeschichte der Oranien-Nassowischen Lande*, Hadamar: Neue Gelehrten-Buchhandlung, 1804.
- Struve, Burkhard Gotthelf, *Ausführlicher Bericht von der Pfälzischen Kirchen-Historie von der Reformation bis hierher*, Frankfurt: Johann Bernhard Hartung, 1721.
- Sudhoff, Karl, *C Olevianus und Z. Ursinus*, Elberfeld, 1857.
- Toepke, Gustav, ed., *Die Matrikel der Universität Heidelberg von 1554 bis 1662*, Heidelberg, 1886.
- Ursinus, Zacharias, "Die Summa Theologiae Ursins," in *Der*

Heidelberger Katechismus und vier verwandte Katechismen,
ed. A. Lang, Leipzig: A. Deichert'sche verlagsbuchh. Nachf.,
1907.

_____. *D. Zachariae Ursini Theologi Celeberrimi, Sacrarum
literarum olim in Academia Heidelbergensi & Neustadiana
Doctoris ... Opera Theologica*, Vol. I, Ed. Quirin Reuter,
Heidelberg, 1612.

2. 2차 자료

이남규,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두 거장』, 서
울: 익투스, 2017.

_____. “팔츠의 교회법에 끼친 칼빈의 영향”, 『칼빈연구』 제10집 (2013),
145-171.

_____. “에라스투스주의의 등장으로서 하이델베르크 권징논쟁”, 『성경신학저
널』 제5권(2013), 273-291.

Drüll, Darmer, *Heidelberger Gelehrtenlexikon 1386-1651*,
Berlin/Heidelberg: Springer Verlag, 2002.

Goeters, J.F. Gerhard. “Einführung,” in Sehling, Emil, ed., *Die
evangelischen Kirchenordnungen des XVI. Jahrhunderts
14*. Tübingen: Mohr, 1969, 1-89.

Mühling, Andreas, *Caspar Olevian*, Zug: Achius Verlag, 2008.

Müller, Karl. “Caspar Olevian - Reformator aus Leidenschaft. Zum
400. Todestag am 15. März 1987,” *Monatshefte für
Evangelische Kirchengeschichte des Rheinlandes* 37 & 38,
1988 & 1989, 13-138.

Münch, Paul, *Zucht und Ordnung*, Stuttgart: Klett-Cotta, 1978.

Neuser, Wilhelm H., “Die Einführung der presbyterial-synodalen

- Kirchenordnung in den Grafschaften Nassau-Dillenburg, Wittgenstein, Solms und Wied im Jahre 1586,” in *Jahrbuch für Westfälische Kirchengeschichte Band 71*, 1978, 47-58.
- Press, Volker, *Calvinismus und Territorialstaat Regierung und Zentralbehörden der Kurpfalz 1559-1619*, Stuttgart: Ernst Klett Verlag, 1970.
- Walton, Robert C., “Der Streit zwischen Thomas Erastus und Caspar Olevian über die Kirchengzucht in der Kurpfalz in seiner Bedeutung für internationale reformierte Bewegung,” *Monatshefte für Evangelische Kirchengeschichte des Rheinlandes* 37/38 (1988/1989), 205-246.
- Wesel-Roth, Ruth, *Thomas Erastus*, Baden: Moritz Schauenburg Lehr, 1994.